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안건은 제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부계획서 보고후 심의한다는 사유로 보류된 안건임.
- 고성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운영관리)의 근거에 의거 고성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노인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직영과 위탁운영 방안을 비교하여 위탁운영의 필요성, 예산절감, 인력 운영, 시설관리 등 운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

#### 5. 질의 및 답변

- 문 : 위탁운영의 필요성, 전문성, 예산투입, 인력운영 등 제반사항을 직영과 위탁운영을 대비 검토 하였는지?
- 답 : 현 노인복지회관 시설운영 당사자의 위탁운영과 기존 보조금 지급 수준에 상응한 관리 운영하므로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예상됨.
- 문 : 시설관리 부분의 인력과 예산편성, 사업규모 등 사업추진 계획은? 위탁관리에 따른 기본예산 소요 파악은?
- 답 : 기존 시설에 노인대학, 식당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단체보다 직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에 있어 원만히 운영될 것임.
- 문 : 정액보조금중 노인지회 운영비 및 노인지회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위탁관련 예산과 관련 사항은?
- 답 : 기 집행중인 사항으로 인건비, 책자발간비, 공공요금, 기본 관리비, 보험료 등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주로 공공요금에 지출되고 있음. 현 계상된 2002년도 위탁관련 예산은 3천만원이나 기존 활용하고 있는 회관의 노인지회 소요경비가 164만5천원은 사용하고 있는바 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 아껴서 지출할 예정임.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2. 4. 1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